KOSHA Guide C-46-2023

를 통고하여야 한다.

- (4) 진동의 검사, 기록 및 해석은 발파작업 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 (5) 발파진동의 경감을 위해 발파효과가 좋은 지발뇌관을 사용하고 발파효과의 상관 관계를 고려하여 저폭속 화약류를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 (6) 폭발음을 경감시키기 위해 토제 등을 쌓거나, 풍향 및 풍속을 고려하고 지발뇌관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 (7) 진동과 소음을 줄이기 위해 정상적인 약량보다 적게 할 때에는 고압가스의 분출 등 이상현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4.2 화약류 운반

4.2.1 운반책임자

- (1) 화약류를 운송하는 운송인은 관련규정(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화약류를 운송하는 운송인은 화약류의 종류에 따라 적재,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제반 규정을 운반책임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 (3) 운반책임자는 출발하기 전에 차량 및 화약류의 적재상황을 점검·확인하여야 하고 운반책임자는 운전기술이 능숙한 사람으로 하여금 화약류 운반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야 한다.

4.2.2 표지

화약류를 운반하는 차량은 화약류의 운반중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보기 쉬운 곳에 표지를 부착하고 경광등을 차량의 앞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4.2.3 통로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 사용하는 통로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발화성이나 인 화성이 있는 물질을 쌓아둔 장소에 근접하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4.2.4 운반기구에 적재